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본 상품의 특약, 적립식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IBK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맞춤형 지원 상품

2 거래 조건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 1. 5. 현재, 세전 기준)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한함 (은행별 1인 1계좌)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제출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 및 검증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 요원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대체복무 요원
발급처	군인공제회C&C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대체복무 기관
	소속부대 소속기관	사회복무 포털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p>상품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p>거래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업점, i-ONE Bank(개인)* * i-ONE Bank 신규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해지: 영업점, i-ONE Bank(개인)* * i-ONE Bank 해지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i-ONE Bank에서 해지가 가능한 조건(아래 ①, ②, ③ 모두 충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기일 이후 해지 ②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i-ONE Bank에서 전역이 확인되는 경우 ③ 기업은행 본인 명의 입출금식 계좌 보유 <p>※ 단, 중도해지, 조기전역, 신분전환(병 ↔ 간부), 복무변경(현역병·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ONE Bank 해지 불가</p> </div>								
<p>가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00원 이상 월 30만원 이내 (원 단위) ※ 단, 최초 가입금액의 최소금액 제한은 없으며,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저축한도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설정 가능 								
<p>계약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일 단위) ※ 만기일은 가입시점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예정일)로 함 ※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은 최대가입기간 24개월로 제한 								
<p>이자지급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p>기본이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가입일 당시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th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4.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5.0%</td> </tr> </tbody> </table>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4.0%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연 4.5%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연 5.0%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4.0%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연 4.5%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연 5.0%								

우대이자율

• **최고 연 5.2%p**

-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이자율 제공

우대 조건 및 이자율

① **군 급여이체 실적 : 연 1.2%p**

- 당행 입출금식 계좌로 급여이체(10만원 이상) 12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월 1회 이상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 1회로 간주함)

【급여이체 인정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당행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급여이체, 기타 이체방식* (지로대량이체, CMS 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 당행간 자동이체 분은 인정되지 않음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연 0.4%p**

- 만기시점에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을 보유한 경우

③ **나라사랑카드 실적 : 연 0.3%p**

- 당행 나라사랑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

④ **적립식상품 신규 : 연 0.3%p**

- 당행 본인 명의 적립식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 제외)을 신규한 경우

* 적금, 펀드, 적립식중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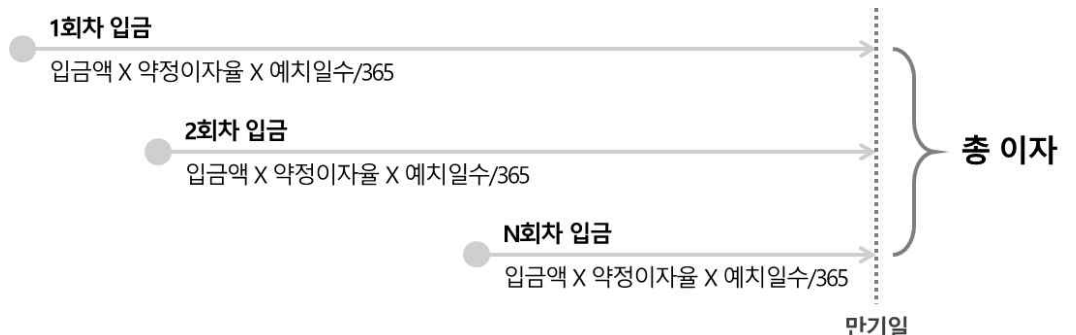
⑤ **기초생활수급자 : 연 3.0%p**

-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 (중지사유:군입대)'를 제출하는 경우

만기이자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 미만 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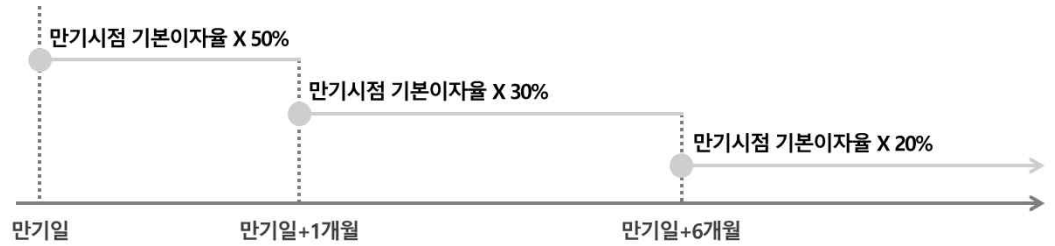
※ $\text{입금건별 이자계산} = \text{입금액} \times \text{약정이자율} \times \text{예치일수(입금일~만기일전일)} / 365$



만기 후 이자율

- 만기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자율 적용(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만기 후 이자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30%
만기 후 6개월 초과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20%



중도해지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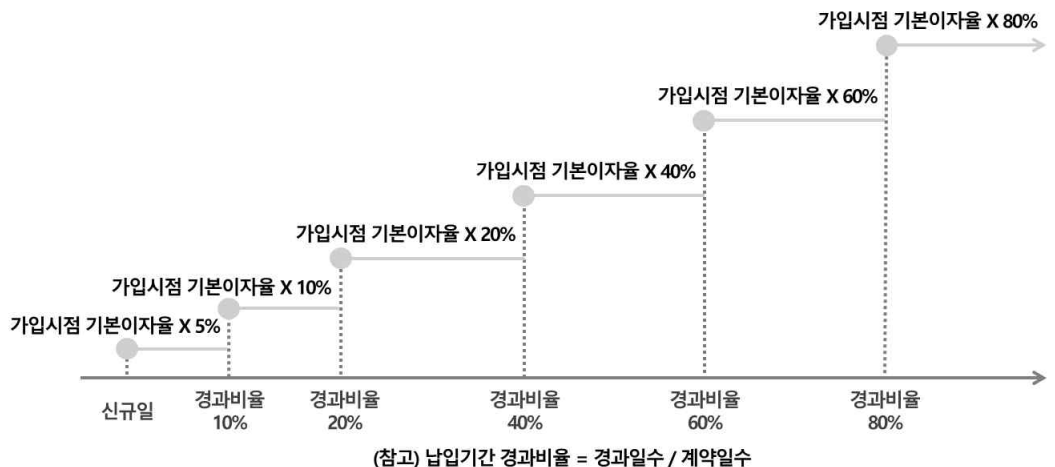
- 신규가입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중도 해지이자율 적용(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자율
납입기간 경과비율 10% 미만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5%
납입기간 경과비율 10% 이상 20% 미만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10%
납입기간 경과비율 20% 이상 40% 미만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20%
납입기간 경과비율 40% 이상 60% 미만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40%
납입기간 경과비율 60% 이상 80% 미만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60%
납입기간 경과비율 80% 이상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80%

※ 모든 구간 최저이자율 연 0.1% 적용

중도해지이자율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 미만 절사)



중도해지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등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예금자보호여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div>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2.31.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 저축한도 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25.1.1. 이전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저축한도 변경이 가능하며, '25.1.1.까지의 비과세 저축한도 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비과세 저축한도 5만원 단위로만 설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25.1.1. 이전 가입한 계좌는 기존 설정한 비과세 저축한도 유지 가능) -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됨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통장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창구에서 실물통장 발급 가능
분할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능
재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불가 / 담보제공 가능
계약해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불가능 • 만기앞당김해지 불가능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p>자료열람요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은행은 법령, 타인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p>휴면예금 및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음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을 통해 조회 가능

3 | 1%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재정지원금의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군재정관리단 (☎ 02-3146-6544/6545) 및 병무청(☎ 042-481-3043, 사회복지요원 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재정지원금 지급 불가

구 분	내 용														
<p>1%이자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만기해지 시점 은행이 지급 														
<p>지급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① 적금 만기해지 ② 만기해지 시 전역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中 택 1) 원본 제출 *대체복무요원이 근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경우 (단, 현역병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359 1556 1476 1713"> <thead> <tr> <th>복무구분</th> <th>현역병 상근예비역</th> <th>의무경찰</th> <th>해양 의무경찰</th> <th>의무 소방원</th> <th>대체 복무요원</th> <th>사회 복무요원</th> </tr> </thead> <tbody> <tr> <td>발급처</td> <td colspan="4">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td> <td>대체복무기관</td> <td>사회복무포털</td> </tr> </tbody> </table> <p>※ 단, 비대면 해지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i-ONE Bank(개인)에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p> </div>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대체 복무요원	사회 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대체 복무요원	사회 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									
<p>지급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 입금금액 건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 미만 절사 														

<p>알아두실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1.10.14.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 - 단, '23.12.31.까지 납입하는 금액에 한하며, '24.1.1.부터 납입하는 금액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해지 계좌는 1%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증빙서류 제출 없이 만기해지 하는 경우 1%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1%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해지 시점에 반드시 전역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中 택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대면 해지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i-ONE Bank(개인)에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생략 가능 • 가입자가 만기해지 시에 전역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中 택1)를 미제출하여 1%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음 • 1%이자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p>매칭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납입 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납입원금에 따라 비율 계산)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p>지급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p>지급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 이후 적금 납입분 : (납입원금 + 이자 + 1%이자지원금) 의 33% • '23.1.1. 이후 적금 납입분 : (납입원금 + 이자 + 1%이자지원금) 의 71% • '24.1.1. 이후 적금 납입분 : 납입원금 의 100%
<p>알아두실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2.1.1.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 중도해지 계좌는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해지 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계좌(기업은행 본인명의 입출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매칭지원금은 만기해지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지급 - 지급일정 관련 내용은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 • 매칭지원금은 장병 목돈 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 가능

4 |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함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시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시간